

『낙농분야』

농업·농촌종합대책(안) 및 검토내용

본 자료는 농림부가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세부추진 대책(안)에 대해 협회에서 검토중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낙농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보완 중에 있으니, 어떠한 의견도 개의치 마시고 협회로 연락주시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I . 낙농정책의 기본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 UR협상 실패와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실패

- UR협상시 모든 유제품이 개방되었고, 특히 분유대용으로 사용되는 혼합분유가 저관세로 개방됨
 - 관세율 : '04년 전지·탈지분유 176%, 혼합분유 36%
 - 수입량 : '95년 약 10만톤 → '03년 기준 약 60만톤
('04년 약 80만톤 추정)
- 국내의 우유수급 불균형의 주원인이 혼합분유 수입 급증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인해 낙농가들은 '02년부터 우유생산제한을 받고 있음

<연도별 우유 생산량>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p)
생산량 (만톤)	203	225	225	234	254	237	225

- 낙농진흥법에 의거 우유수급 조절기구로서 '99년 탄생한 낙농진흥회의 운영실패로 가입율이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급기야 농림부는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 사업 포기를 밝힘

<집유일원화 현황>

	1999	2000	2001	2002		2003	
				서울우유 탈퇴전	서울우유 탈퇴후	부산·제주 탈퇴전	부산·제주 탈퇴후
추진계획	50%	70	80	90	90	90	90
집유일원화율	36.9%	56.1	62.7	65.9	37.4	37	27.8

□ 수입개방으로 인한 원유생산 기반의 위축

- '95년 WTO 공식 출범이후, 혼합분유 등 수입유제품의 범람으로 원유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2002년부터는 정부차원의 도태, 원유생산감축(폐업보상제) 정책 등을 실시함

<연도별 주요 유제품 수입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10
전지분유(톤)	194	461	693	1,540	1,073	1,659	1,312
탈지분유(톤)	2,648	2,842	3,004	5,259	4,160	4,583	3,240
혼합분유(톤)	12,285	21,795	24,626	18,215	21,712	12,713	23,721
치즈(톤)	13,263	21,284	30,640	34,451	29,228	35,779	34,071

- 농가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유업체별 쿼터제 도입 등 농가 생산 제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낙농가의 유대수입이 크게 저하되었음
- 목우촌, 경북낙협, 대구우유, 광주전남우유, 경남낙협, 청주우유, 대전우유, 모닝벨, 건국(인천공장), 해태(대구공장) 등 낙협 7개소, 유업체 3개소 등 총 10개소(488톤/일)가 폐업함

<폐업 또는 도산 유업체 내역>

조합 (유업체)	폐쇄일	물량	조합 (유업체)	폐쇄일	물량
청주우유	00. 2월	46톤	모닝벨	01. 2월	35톤
건국우유	01. 8월	22톤	광전우유	01. 9월	30톤
경남낙협	01. 12월	65톤	목우촌	02. 2월	126톤
대전우유	02. 11월	48톤	경북낙협	02. 10월	21톤
대구우유	02. 10월	60톤	해태유업	01. 8월	35톤

<연도별 낙농가수>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9
낙농가수	15,671	14,392	13,348	12,827	11,716	10,514	9,967

□ 생산성 향상과 원유품질 개선

- '95년 이후 낙농업 구조조정 과정 중에서 낙농가들은 선진 낙농국과 수입유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소비자의 안전축산물 생산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생존경영을 유지하고 있음
 - 원유의 품질면에서는 원유의 신선도 지표의 하나인 평균세균수가 2.3만(/㎖)에 도달함으로써, 최상급 기준인 1A등급(3만/㎖)을 달성하였고, 체세포수 역시 평균 32만(/㎖)을 달성함으로써 미국 DH의 평균인 31.9만(/㎖)과 거의 대등한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었음

	세균수					체세포수		
	3만 미만	3만~10만 미만	10~25 미만	25~50 이하	50만초과	20만 미만	20~50만 이하	50만 초과
2003	79.4%	14.9	3.8	1.1	0.8	31.7	49.6	18.7
2002	78.0	16.0	4.0	1.2	0.8	25.7	51.2	23.1
2001	75.1	17.6	4.7	1.5	1.2	21.7	48.8	29.5
2000	71.2	20.4	5.3	1.8	1.3	22.1	50.2	27.8

□ 원유가격 결정

- 낙농진흥회 출범 이전 원유기본가격은 정부고시가격이었으나, 낙농진흥법 개정에 의한 낙농진흥회 출범 이후 진흥회 소속은 진흥

회 이사회에서 결정함

- 그러나,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된 원유가격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런 의미에서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 결정은 과거에 농림부가 결정·고시한 가격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

	'85	'89	'91	'93	'95	'98	'99~'04	04.9
원유 가격	322원/kg	364	383	394	423	502	502	567 (584원/l)

-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우유 생산비조서에 근거하여 조정하게 되어있으나, 생산비 조서의 정 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난 04년 9월 원유가격 13% 인상시에도 농관원의 생산비조서를 근거로 해서는 원유가 조정사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나 유업체의 입장이었음
- 따라서, 합리적인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기본 방향

□ 우유 자급율 설정 및 정부의지 확정

- 낙농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유의 자급율 목표 설정이 최우선 과제임
- 우유자급율 목표설정과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낙농가 소득보장 대책, 생산지원대책, 소비확대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일본의 경우, 지난 '95년 WTO 협정이 발표되면서 자국의 낙농육우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낙농산업을 이끌고 나갈 '낙농육우 근대화 기본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 공표함
; 원유자급율은 현재 71%에서 75%로 끌어올리고, 원유생산은 연 1.5% 신장을 목표로 993만톤으로 책정함
 - 중국의 경우, 지난 2002년 핵심 10대 사업에 낙농육성 정책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 23조의 예산투입을 결정,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실정임

□ 낙농가 경영안정 방안 마련

- 낙농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낙농인을 감축 시켜 인위적인 규모화, 전업화에 의한 수치상의 경쟁력 제고가 되어서는 안됨
 - 무리한 규모화, 전업화 추진시 자본투여에 따른 부채증가로 오히려 경쟁력 상실 우려
- 깨끗한 목장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낙농산업이 365일 착유해야 하고 노동강도가 높은 산업인 만큼 타 농업과 마찬가지로 후계자가 없는 상황인 만큼, 낙농 후계자 양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시유 소비확대 및 유제품 시장 확대 방안 마련

- 낙농가들은 직접 생산한 우유의 소비확대를 위한 자조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
 - 99년 임의자조금으로 시작하여, 05년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 중임
- 현재 유업체는 자조금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곡류, 과일 등 혼합한 가공유나 유음료, 쥬스 등을 생산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소비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가치판단을 혼란시키고 있음
 - 일부에서는 백색시유의 더 이상의 소비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 심지어, 유업체에서는 수입콩을 원료로 우유대체음료인 두유 음료까지 생산, 판매하여 시유(흰우유)와 일반 음료와의 경쟁 관계를 심화시킴
- 학생들의 우유급식은 영양과 교육차원에서 반드시 백색시유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고교까지의 우유 의무급식이 되어야 함
- 또한, 시유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유제품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치즈산업 육성, 유가공(낙농)조합의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II. 세부추진대책(안)

원유가격 결정시스템

6-23. 원유가격결정시스템 개선

1. 농림부 종합대책 주요내용

- 낙농가와 유업체의 직결체제 전환을 통해 수급조절체계의 효율성 제고
 - 직결체제 전환에 대한 공론화 추진 및 의견수렴
 -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개최, 낙농가 및 유업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등
 - 직결체제 전환원칙에 대한 이해당사자(낙농가, 유업체, 집유조합 등)간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집유선 전환
 - 근거리 공장 원칙에 의해 집유선을 조정, 진홍회 물량(농가)를 일괄 이관 추진
 - 계약공급량을 초과하는 이관물량에 대하여는 유업체에 일정 기간 차액보전
- 원유가격은 생산자(또는 조직)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
 - 원유직결체제 추진과 병행하여 수급상황에 따라 유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원유가격 결정산식 개발
 -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이해 당사자간 합의시스템 구축
 - 낙농가, 유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 전년도 기준가격과 생산비 변동수준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

하여 조정안 도출

- 조정안을 토대로 낙농가 및 유업체가 합의안을 도출토록 유도
- 합의기간이 일정기간(30일)내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협의체의 중재안으로 자동 결정

□ 체세포수 · 세균수 · 유지방 등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으로 유질 개선 및 위생수준 제고

- 체세포 하위등급(4, 5등급)에 대한 패널티 강화
- 세균수 하위등급(3, 4등급)에 대한 패널티 강화
- 유지방률 구간 및 구간간 가격차 축소 조정
 - 현행 15개 등급 구간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15 \rightarrow 10 \rightarrow 5 \rightarrow 3$)
 - 유지방의 가격비중을 낮추고 등급구간간 가격차 축소 조정
 - 유지방에서 제외된 가격효과를 체세포 상위등급에 반영

□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	2단계('05 ~'08)	3단계('09 ~)
○원유가격결정시스템 개선	○원유직결체제전환 추진 ○원유가격 결정 시스템 개선 검토	○체세포 · 세균수 · 유지방 등 원유가격 산정 체계개선	

2. 현황 및 문제점

□ 일방적인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 추진

- 당초,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낙발협)에서 직결체제 전환 여부 등 중장기 낙농정책에 대해 논의키로 하였으나, 낙발협 논의없이 유업체와의 직결전환을 결정하여 발표함
 -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이 의미하는 것은 원유수급 조절이 유업체 주도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공론화 절차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임
- 낙농가와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시 낙농가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 농가 거래교섭력 확보, 검사공영화 문제, 기준원유량 보장 및 신변보장 문제 등

□ 세계 유례없는 원유가격의 시장원리 적용 추진

- 원유가격을 생산자(또는 조직)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우유의 특성상 원유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서는 안됨
 - 우유의 대량성, 계속성, 부패성으로 농가 교섭력이 전무한 특성을 인정하여야 함
- 낙농진흥회 출범 이전에는 정부고시 가격이었으며, 낙농진흥회 출범이후, 낙농진흥회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으나, 진흥회 권역 밖에서도 진흥회의 원유기본 가격을 준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음

- 원유가격을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것은 완전개방에서 잉여량에 따라 원유가격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며,
- 또 농가 거래교섭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원유가격 자율 조정은 낙농가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됨

3. 보완대책 및 요구사항

□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 관련

-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낙발협’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낙농가의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함
 - 낙농진흥회 출범이전 발생되었던 유업체의 횡포 등 낙농가 피해 및 불이익 해소 방안 마련
- 농가 안전장치 마련없는 유업체 직결체제 전환은 낙농가의 거래교섭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또한 원하는 농가, 지역부터 전환시키게 된다면, 더더욱 낙농가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있어야 함

□ 원유가격 결정 관련

- 원유가격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산자와 유업체가 직접 결정하는 형태의 시장원리로 결정되어서는 안됨
- 또한, 원유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생산비 발표를 위한 생산비 조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 원유생산비 조서의 현실적이고 객관성과 합리성 보장 전제
 - 생산비조사가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사에 필요한 원칙, 기준설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가 형

성되어야함

- 또한, 원유가격 결정에 참조할 유제품(특히 전량 원유를 이용하는 시유에 한해서만이라도) 원가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관련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유지방의 가격비중을 낮춰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이나, 그 동안의 사양체계 등 단기간에 변경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유질개선 및 위생수준 제고를 위해 체세포수나 세균수의 하위등급에 패널티를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패널티 부분만큼 상위등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분뇨 · 환경 · 질병

2-10. 축산업 등록제

1. 농림부 종합대책 주요 내용

□ 축산업등록제 주요 내용

- 축산업 영위농가 시장·군수에 등록
 - 소 사육농가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300m²초과하는 농가
- 적정 숫자 이상 가축 밀집사육 금지(07. 1 시행)
 - 농림부 고시로 운영
 - 깔짚우사 12.8m², 계류식 8.6m², 후리스톨 9.0m²
- 등록기간 : 03년 12월 27일부터 2년 이내
-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미등록시 2년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축산업 등록 촉진 대책 수립·시행

- 등록제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대대적 홍보 실시
- 등록촉진대책반을 구성, 상시 점검·지원체계 구축
- 미등록농가는 각종 정책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방안 검토
- 관련 생산자단체에 등록제 홍보실적에 따라 비용 지원
- 등록추진 유공자 해외선진지 시찰 및 장관표창 실시
- 시·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시·군별 전산보조인력 지원

□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	2단계('05 ~ '08)	3단계('09 ~)
○ 위생·방역강화 및 환경 친화적 축산업 육성 ·	○ 부화업·종축업, 계란 집하업 등록완료	○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완료	-

2. 현황 및 문제점

- 선진축산의 전제요건인 가축질병 방역,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한 취지에는 모든 낙농가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임
- 그러나, 축산업 등록제는 당초 목적인 질병예방과 축산물 안전에 부합되지 않고 농가 규제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등록대상 농가가 젖소 71%, 한육우 4.3%, 돼지 59%, 닭2% 수준에서, 등록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질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전업농 5천호가 사육의 90%를 담당'에 바탕을 둔 농가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임
 - 낙농인을 감축시켜 인위적인 규모화, 전업화에 의한 수치상의 경쟁력 제고가 되어서는 안됨
 - 더욱이 낙농의 경우, 우유수급 불균형으로 02년부터 생산제한을 받고 있고, 때문에 신규 농가 또한 상당한 제약을 받아 신규진입이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상태 그대로를 등록하면 된다고 하나, 농가·목장의 기본적인 자료를 등록하게 되므로 오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타 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할 뿐 이에 대한 대책에는 미흡한 실정임
- 축산법에 따르면 미등록시 2년이상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별금 부과, 영업정지 명령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별금 등 강력한 처벌조항이 상존하고 있음
 - 가령, 낙농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30일 처분을 받을 시 타 축종과 달리 매일 착유를 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영업정지는 폐업을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07년부터는 두당 사육면적이 농림부 고시로서 적용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사증축이 아니라, 가축사육두수를 줄여야 하는 것임

3. 보완 대책 및 요구사항

- 현재 낙농을 하고 있는 농가가 등록제 도입으로 인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됨
 - 농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전대책 마련
-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무허가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가 필요함
- 또한, 당초 등록제의 취지와도 맞도록 근본적인 축산분뇨 자원화 대책 마련 등이 시급함

2-11.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1. 농림부 종합대책 주요내용

□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주요내용

- 기본프로그램 이행 : 1,300만원/호 한도내 지급
-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 200만원/호 한도내 추가지급 (인센티브만 참여불가)

	세부요건	직불금 지급기준
기 본 프 로 그 램	<p>(한육우·젖소)</p> <p>① 조사료포 확보 (처리기준면적 60%이상) ② 발생된 분뇨의 60%이상 사료포 환원</p> <p>(공통 부대요건)</p> <p>①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 ②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③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p>	<p>○ {(처리기준면적~확보필요면적) -농가평균보유면적} ×570원/평 * 소득차(10a당)=171,500원 (쌀-사료작물)</p>
인 센 티 브	<p>①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 등 식재·관리</p>	<p>○ 조경수 구입비용 (30천원/이루이내)×50%</p>

※ 조사료포 확보 면적

	처리기준면적 (A)	확보필요면적 (B=A*60%)	농가평균보유면적 (C)	추가확보예상면적 (D=B-C)
한육우	622㎡(188평)	374(113)	291(88)	83(25)
젖 소	1,524(461)	916(277)	651(197)	265(80)

<지급요건 위반시 제재기준>

- 위반사실 발생횟수에 따라 규제
 - 1회 : 시정지시 및 직불금 20% 감액, 2회 : 사업취소
 - 축산분뇨처리(오분법)·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가축전염병예방법), 항생제 사용(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기준) 등
- 친환경축산시스템 정착을 위해 추진계획을 단기·중기·장기로 시기를 나누어 기반확립단계('04~'05), 발전단계('06~'08), 정착단계('09~'13)의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기반확립단계('04~'05)는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친환경축산프로그램 보완
- 발전단계('06~'08)는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이행평가 보완
- 정착단계('09~'13)는 친환경축산업 시스템으로 전환과 친환경축산직불제 정착 추진
- 동물 복지, 조방화 등 직접지불제 도입 방안 마련('09~)
- EU 등 축산선진국의 동물복지, 조방화 등 직접지불제 추진사례 분석 연구용역 실시
- 국내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조방화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방안 마련
-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05)	2단계('06~'08)	3단계('09~'13)
①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수립 -시범사업추진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연구용역실시	-이행평가 및 세부 프로그램 보완 -직불제 등 다양화 검토	-동물복지, 조방화 등 직접지불제도입방안 마련
②사업추진	-시범사업 성과분석	-사례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참여율확대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낙농가가 보유한 조사료포와 직불금을 받기위해 필요한 조사료포 확보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낙농가가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젖소의 경우 최소한 916m^2 (277평)/두, 한육우 374m^2 (113평)/두를 확보해야 하며,
 - 평균보유 면적을 가진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젖소 265m^2 (80평)/두당 확보하여 45,600원, 한육우의 경우 83m^2 (25평)/두 확보하여 14,250원/두에 불과함
- 직접지불제는 농가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농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도록 해서는 직접지불제의 의미가 없음

3. 보완 대책 및 요구사항

□ 조사료포 면적 및 기준 완화

- 조사료포 면적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음
 - 지역 실정을 고려한 두당 조사료포 확보 필요면적을 산정, 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사료포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조사료포를 임대하는 경종농가에 인센티브 지급
 -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분뇨처리 계약체결시 경종농가의 농지에 분뇨가 살포되는 면적을 조사료포 확보면적에 포함
 - 축산농가가 소유지에 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여 분뇨를 활용하고 있다면, 타직불금 사업 참여와 관계없이 조사료포 확보면적에 포함

□ 동물 복지, 조방화 등 직접지불제 도입 방안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 선진국의 동물복지, 조방화 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나, 농가의 생계와 관련된 밀접한 사안이 될 수 있음
 -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

2-12.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1. 농림부 종합대책 주요내용

-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 방안 수립
-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신규 및 보완자금 지원 확대
 - 축분퇴비판매가격 차손보전 확대로 경종농가 퇴비사용 유도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축분퇴비·액비 이용 지원
 - 축분퇴비용 수분조절제 제조시설 설치 지원 확대
 - 경종농가 작목반과 연계한 축산분뇨 액비화 이용 활성화 지원 확대
-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연계한 적정 사육두수 유도
 - 적정 사육두수 유도로 가축분뇨 발생량 억제
 - 지역별 축산분뇨총량제 추진 검토
 -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축산분뇨처리 신기술 개발 및 기술교육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	2단계('05 ~ '08)	3단계('09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분퇴비액비저장조 설치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02) 552기 → ('03) 682 → ('04) 800 ○ 축산분뇨처리시설 신규 및 보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402억원 ※ 설치율 : 98% ○ 축분퇴비판매가격 차손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2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연계한 가축사육 두수 제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신규 및 보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율목표 :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분뇨처리시설 신규 및 보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율 : 98%

2. 현황 및 문제점

- 악취방지법 제정, 양분총량제 도입 논의 등 축산분뇨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
-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설립 등이 절실히 필요함

3. 보완 대책 및 요구사항

-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설립
 - 개별 농가와 축산분뇨공공처리장, 지역 경종농업과 연계한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설립 필요
- '가축분뇨관리·이용'법률 제정시 농가 정책 지원
 - 가축분뇨의 자원화 유도로 친환경 농업육성

- '05 악취방지법 시행, '07년 양분총량제 도입, '11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검토에 따른 축산분뇨 자원화 방안
 - 목장 환경, 분뇨를 제재하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목장 현장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반 준비가 되어야 하며,
 - 강제적인 법 규제 강화는 농가의 반발을 사게 되므로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4-16. 가축질병 방역대책

1. 농림부 종합대책 주요내용

□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제 구축

- 광우병, 한우 부루세라병 등 질병별 대책 추진
-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감염 차단을 위한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 가축질병발생 사전 차단

○ 건강한 가축 사육 환경 조성

- 축산업등록제 정착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밀도 완화 추진
- 가축 밀집사육 지역 특별관리 및 분산 유도

○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활동 강화

-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 및 홍보강화
- 악성전염병 발생국 여행 축산농가·현지 축산경영자 중점관리
- 탐지견 투입확대 등으로 질병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집중 검역·검색
- 검역검사대 추가확보 및 복지부 검역대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객 휴대품 개봉 검사 확대

○ 농가들의 소독 등 방역의식 고취 및 자율방역 강화

- 지역별 담당관제 운영 등 상시 예찰체계 구축으로 의심축 조기 색출

- 농장 소독시설 설치기준 및 소독방법 등 구체화 및 농가교육 강화
- 농장의 외국인 고용실태 정기적 파악 및 피고용인 대상 교육·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책임과 능동적인 역할 강화

- 방역 추진실적 등을 평가, 정책자금 지원 차등화 및 공표
- “전국일제소독의 날” 마을 “공동방제단” 운영 내실화 및 시·군별 “지역방역협의회(농협·협회등 참여)”를 통한 민간방역 활성화
- 사료·분뇨·차량 등 출입경로를 사전에 파악, D/B화 추진
- 살처분 보상금 등의 지방비 부담확대로 지자체 방역 책임감 고취

○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특별방역관리 및 폐사축 관리 강화

- 폐사축은 소각로나 렌더링 열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폐사축을 불법처리하거나 가축에 급여한 자(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 폐사축 수거·운반시스템 구축 및 소각시설 등 설치·운영 지원

□ 발생시 초동방역 및 종식 후 사후관리 강화

○ 발생시 초동방역체계 강화

- 발생 농가 사람·차량 등 이동통제, 소독 등 관리 강화
- 역학 조사 등 초동대응체계 보완

○ 종식 및 발생지역 사후관리 강화

- 매몰지 정기점검, 인근 지역 수질 검사 등 사후관리 철저

□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	2단계('05~'08)	3단계('09~)
○ 소부루세라병 최소화	-검사증명서 미첨부 소의 가축시장 거래금지 -관련 규정 제개정	-검사인력 확보(81명)	-발병 최소화
○ 광우병 예방 -검사강화 -사료안전 관리 지원 -홍보 -검사시설 지원 -연구시설 -검사인력 확보 -신속검사카트 -축산물검사관수의사) -SRM처리	-2,200두 검사 -분석장비 : 800백만원 -제조라인구분 : - -사료추적관리: 70백만원 -매년 110백만원 -9개소(300백만원/개소)	-3,000두 검사('05) -1,000백만원 -30개소(3,000백만원/개소) -매년 110백만원 -11개소 -1개소(연면적 1,500평) -44명 -매년 30만두분 -117명 확보 -10개소(10억/개소당) -년간 5,400백만원	-5,000두 검사('06부터) -검토 -검토 -검토 -검토 -매년 110백만원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검토
○ 구제역 등 각종 질병 방역	-47,412백만원	-매년 50,000백만원	-매년 10,000백만원
○ 밀집지역 농장 이전	-농장당 : -	-2,000~3,000백만원 응자 -철거비 15백만원 개소당	-2,000~3,000백만원 응자 -철거비 15백만원 개소당
○ 국경검역 -홍보 탐지견 운용, 검사, 전문가 양성 등	-	-매년 20억원	-매년 30억원
○ 폐사축 관리	-폐사축 처리시설 : -	-1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개소당)
① 방역본부 운영강화	-8도본부 38출장소 175명 가축방역업무중심	-9본부 40출장소 190명 위생검사업무추가	-9본부 44출장소 200명 방역·위생업무 정착

2. 현황 및 문제점

- '00년 이후 교역증가로 인수공통전염병과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이 유입되어 대책이 시급함

- '00년 구제역 최초 발생, '02년 재발로 인해 4,400억원 피해
- 부루세라 병 등의 인수공통전염병은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피해가 발생되어 축산물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
- DDA 등 여건변화에 따라 외국과의 교류확대로 해외악성전염병의 유입이 증가하고, 유입경로가 더욱 다양해짐
-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계속 증대됨에 따라 축산물 안전, 방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3. 보완 대책 및 요구사항

□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관리강화

- 부루세라 발병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검사 실시 및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부루세라에 감염될 수 있는 모든 축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 필요
 - 유우, 육우, 한우, 개, 고양이 등
 - 젖소의 경우는 지속적인 질병 검색 및 살처분 실시로 감소추세이나, 타 축종에서 계속적,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임
- 부루세라 살처분시 보상금 현실화 필요
 - 젖소는 고기소와 달리 산유량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평가되므로 이에따라 살처분 보상이 적정하게 평가되어야 함
 - 현재, 착유소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농가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소백혈병 및 요네병 관리 방안 수립

- 정책 또는 인공수정시에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인공수정할 때에 사용되는 정액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함
 - 구제역, 소백혈병, 소전염성비기관지염, 우역, 불루텅, 부루세라, 결핵병, 요네병, 렙토스피라병, BSE 등
- 후대검정사업시 수반되는 전염병 검사에서 백혈병 및 요네병 양성으로 인하여 종모우 선발에 어려움이 많음
- 많은 젖소 농가에서 백혈병 및 요네병 발병되는 원인으로는 이 질병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이러한 질병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향후 DDA등 여건변화에 따라 축산물 수입허용 압력(동등성 요구)에 대처하고, 국내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백혈병 및 요네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함

<별첨>

정액으로 전파할 수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 목록

구제역(FMD) 소백혈병(Leukosis), 소전염성비기관지염(IBR), 우역(Rinderpest), 불루텅(Blue tongue), 아까바네병,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 악성카타르열(Malignant catarrhal fever), 우폐역(Mycoplasma mycoides), 소부루세라병, 소결핵병, 요네병, 렙토스피라병, 소생식기캡필로박터감염증, 전염성털전전색성수막뇌염(Haemophilus somnus), Q열(Q-fever), 트리코모나스병, 광우병(BSE)

* 참고자료 : Wentink GH 등, Prevention of disease transmission by semen in cattle. Livestock Production Science. 62:207-220, 2000.

사양 · 경영 안정

1-5. 가축개량사업

1. 농림부 종합대책 주요내용

- 젖소 산유능력검정은 개량의욕이 높은 농가 중심으로 자율적 참여 확대
 - 검정은 자부담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 참여 유도로 검정참여율 제고
 - ('03)140천두, 28억 원 → ('04)140천두, 24억 원
 - 젖소 수정란이식의 시범추진으로 개량 효율화 : '04년 2개소
- 가축개량 사업소를 포함한 가축개량기관의 기능조정 및 운영 개선 마련
 - 축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를 독립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제 도입
 -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정액대를 생산비 수준으로 현실화 하여 경영수지 균형 유지
 - ; 인건비를 사업비의 20% 이내 유지, 경비절감 및 정액공급가 현실화
 - 축종별 종축등록 및 검정기관이 다수로 분산된 가축개량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가축개량추진의 효율성 제고
- 가축개량 총괄기관(축산연)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 등록업체의 종축생산 및 질병관리 이행 점검 의무화

- 업체에 대한 정기 확인검사 철저로 질병관리 강화

□ 추진일정

추진 전략	1단계('04)	2단계('05 ~'08)	3단계('09 ~)
<가축개량>			
○ 한우 18개월 체중	550kg	590	610
○ 젖소산유량(305일)	7,720kg	8,240	8,500
○ 돼지일당 증체량	956kg	972	980
○ 산란계 연간 산란수	297개	300	303
<가축개량>			
○ 한우	33%	40	50
○ 젖소산유량	55%	57	60
○ 돼지일당	41%	45	50

2. 현황 및 문제점

- '97년 현재의 능력검정 체계를 완성한 후 계속 보조금이 축소되어 '04년 현재 검정소요 비용의 30% 수준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개량사업의 핵심인 한국형 종모우 생산사업은 초보 단계임

3. 보완대책 및 요구사항

- 한국형 종모우 생산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국가가 검정 사업 소요비용의 50% 보조 지원

2-1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1. 농림부 종합대책 주요내용

- 남는 논·밭 등 농경지에 하계 및 동계 사료작물 재배
 - 종자·비료 현물지원, 지역별 적합한 종자 공급 및 기술지도
- 경종농가와 연계한 총체보리 생산·이용 활성화
 - 연차별 계획 : ('02) 859ha→('03) 2,681→('05) 3,000→('10) 5,000
-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 연차별 계획 : ('03) 20set→('04) 50→('05) 70→('10) 100
- 벗짚 암모니아 처리 및 생벗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추진
 - 암모니아 가스 주입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시 비닐 공급
-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	2단계('05 ~ '08)	3단계('09 ~)
① 조사료 급여 비율 확대	-급여 비율 : 45%	- 급여 비율 : 50%	- 급여 비율 : 60%
② 총체보리 재배면적 확대	- 재배면적 2,000 ha	- 재배면적: 3,000 ha	- 재배면적: 3,500 ha
③ 사료작물 재배량 확대	- 사료작물 재배량 : 110천톤	- 사료작물 재배량 : 127천톤	- 사료작물 재배량 : 150천톤

2. 현황 및 문제점

- 연간 조사료 수요량(4,200천톤 수준) 중 20%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임
 - 초지 · 사료작물 재배 : 137천ha(초지 47, 사료작물 90)
 - 목 · 건초 1,346천톤, 벗짚 · 산야초 2,000, 수입 850

	국내생산			수입(B)	계 (C=A+B)	수입조사료 이용율 (B/C)
	목건초	벗짚 등	소계(A)			
'02	천톤 1,202	2,000	3,202	643	3,845	16
'03	1,249	2,150	3,399	655	4,054	16
'04	1,346	2,000	3,346	850	4,196	20

- 인력 · 장비 부족으로 국내 조사료 생산을 기피
 - 사료작물재배지 확보가 어렵고, 조사료 생산 기계 · 장비는 연간 사용일수(30일)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고가여서 장비구입시 농가 자금 부담이 큼

3. 보완대책 및 요구사항

- 경종농가의 조사료 생산사업 참여 활성화 및 조사료 생산 장비 보조지원 확대
 - 경종농가는 벼 · 보리 등 곡물 재배시의 소득수준 보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축산농가는 자가생산비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요구하고 있음

- 연결체(농축협) 및 조사료 생산농가는 조사료 생산 장비 부족 등으로 기피경향
 - 총체보리사업 등에 지원되는 장비보조가 1개조(트랙터, 베일러, 래핑기, 예치기)에 한해 보조지원되고 있으나, 장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는 상황임
 - 논·밭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도 지력저하, 소득보장 문제, 재배시기 등으로 축산농가에 임대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 조사료 사업에 참여하거나, 축산농가와 논·밭 조사료 임대차 계약을 한 경종농가에 소득수준 보장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 조사료 생산 장비 보조 확대
 - 현행 연결체(농축협 등)에 한해 보조(보조30%, 지방비 30%, 자담 40%) → 조사료 생산농가로 확대, 장비 범위 확대, 보조+지방비 70~80% 수준까지 확대

□ 조사료 생산기지와 수요지역 연결 방안 강구

- 재배 작황, 수입조사료 수급 등 연초 수요예측이 어려워, 실제 총체보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 시군 및 연결체(농축협)에서 관할구역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물류비용 상승, 운반장비 문제, 품질 문제 등으로 중부지방에서 구매 및 활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임
- 농협중앙회나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조사료 생산기지 연결체와 수요농가 간의 연결 판매 방안 마련
- 물류비용, 운반장비 구입 등 장비개발 등에 대한 보조지원

□ 목초용 필름 부가세 환급 제외 및 원활한 공급

- 곤포사일리지에 필요한 비닐(필름)의 경우 농업용 필름에서 제외 되 있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농축협에서 목초용 필름을 공급하고 있으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목초용 필름 부가세 환급 및 목초용 필름 수급 계획 철저

□ 지역실정에 맞는 조사료 생산기지 사업 시행

- 남부지역의 경우, 총체보리사업, 벗짚 등 부존자원 이용 등으로 조사료 수급이 중부지역에 비해 안정적이나, 중부지역의 경우 재배 시기(2모작 등)등의 문제로 총체보리사업, 농지임대차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벗짚 및 수입 조사료 의존
- 유휴하천 부지 이용 허용, 산간 초지, 유휴농지 등의 초지 전환에 필요한 개간비, 장비 등 보조로 조사료 생산 기반 마련

6-26. 가축공제사업

1. 농림부 종합대책 주요내용

□ 다양한 상품개발 및 보장범위 확대로 가입 확대

- 사슴, 양봉, 꿩 등 기타가축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여 가입대상 축종 다양화
- 안정적인 경영유도를 위한 생산비 보장 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로 보장 범위 확대

□ 경쟁체제 도입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

- 농협중앙회와 민간보험사 참여 유도로 활성화 유도
- 공제상품별, 축종별 특성 등에 따라 공제료 지원을 차등

□ 농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및 서비스 강화

- 사업주관기관(농협)의 사전 질병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위험 분산 등 부가서비스를 확대

□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	2단계('05 ~ '08)	3단계('09 ~)
①공제상품개발	-가입월령조정(3→2)	-대상축종합대 (사슴,꿩 등)	-질병, 생산비보장 등 상품개발
②임의자조금	-무료진료 등 서비스 강화	-상품별 보조율 차등 -민간보험사 참여	-보조율 년차적 감축
③가입율확대	-가입율 15%이상	-가입율 30%이상	-가입율 60%이상

2. 현황 및 문제점

- 재해와 사고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97년부터 추진
 - 보장내용 :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에 의한 폐사, 부상 등의 손해에 대한 시가의 80% ~100% 보상
 - 납입공제료 : 농가부담 50%, 보조지원 50%(송아지는 60%)
- 최근 재해발생 증가로 공제에 대한 농가인식이 개선되어가입 증가
 - '03년 가입실적 : 소 7.0% 수준
- 법정 전염병, 소득 및 생산비 보장성 상품 등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 요구 증가 추세

3. 보완대책 및 요구사항

- 가축 보상 범위 확대
 - 보상 범위내 폭설이나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되어 있어 이에대한 범위확대가 요구됨
 - 또한, 부루세라 등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도 보상범위에 포함해야 함
- 보험료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보험금 지출과다를 이유로 가축공제 도입초기에 비해 보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농가부담이 심화된 상태로 보험 재가입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추세임

□ 민간보험사 참여 문제

- 민간보험사의 참여로 경쟁을 유발해 일시적인 보험료 하락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농협중앙회와는 성격이 다른 민간보험사에 대한 계속적인 정부지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후 농가부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우유소비 확대

6-22. 축산자조활동자금 사업

1. 농림부 종합대책 주요내용

□ 원활한 사업 추진 유도

- 자조금활동자금의 운영취지를 감안하여 공동추진시 단체간 협조 및 원활한 협의유도
 - 축산단체간 의무자조금 미합의시 해당축종 생산자단체 중심 임의자조금 추진 유도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검토

- 의무자조금 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관련기관 및 단체의견 수렴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작성
 -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추진
- 자조활동사업 시행과정을 점검하여 제도개선 등 보완 추진
 - 주관단체 선정, 의무자조금조성여부 찬반결정 및 운영방법 등
 -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의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및 보완

□ 추진일정

추진전략	1단계('04)	2단계('05 ~'08)	3단계('09 ~)
①임의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소요예산확보	-축종확대(꿀벌·사슴 등) -일부 축종 의무자조금 사업으로 전환	-축종확대 및 정착
②의무자조금	-주요 축종 실시 -제도개선 -대의원선출 등 준비	-의무자조금사업 정착	-의무자조금사업 정착

2. 현황 및 문제점

-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법률이 제정·공포('02.5.13)됨으로써 **의무자조금제의 법적근거 마련 및 시행령·시행규칙 공포('02.11.14)**
- 낙농자조금사업의 경우 시행 첫해인 '99년부터 '04년 현재까지 임의자조금으로 사업진행
 - 자조금사업 동참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99년 82% → '03년 65%)
- 협회 이사회 및 전국순회 낙농강습회시 의무자조금제도 조기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05년 상반기에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임

3. 보완대책 및 요구사항

- **의무자조금 제도보완**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시 축종간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개정이 필요
 - 사업주관단체 선정(협회와 농협이 공동운영 → 협회단독 또는

농가들의 투표에 의해 주관단체 결정)

- 대의원수 조정(150명 → 60명)
- 대의원 선출방식 개선(선출할 대의원수만큼 후보가 등록할 경우 무투표당선 또는 연서 등의 다양한 투표방식 도입)
- 유업체의 자조금사업 동참 방안강구

□ 자조금의 적립방안 강구

- 낙농박물관 설립 등 사업당해년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대형사업시행 또는 우유소비증가로 인한 자금이월시 정부보조금과 함께 자조금을 적립하여 향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마련

□ 수입유제품에 대한 우유홍보기금 거출

- 수입유제품으로 인해 국내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업자에게 우유홍보기금 부과필요

6-24. 학교우유 급식

1. 농림부 종합대책 주요내용

- 농협중앙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우유 소비촉진 홍보 적극 추진
 - 인기연예인, 스포츠스타를 활용한 TV(라디오) 공익광고 지속 추진
 - 우유 다큐멘터리 제작·방영(3부작), 114안내전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우유테마 콘서트, 여성낙농가 홍보요원 교육, 전시회·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소비자 관심 유도
- 초·중·고 교과서에 우유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우유소비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
 - 초·중·고 교과서 집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추진
 - 현장체험 대상자를 지역 영양사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 * 방학 등을 이용, 2~3일간 목장·유가공 공장 견학, 설명회 등 현장 체험
 - 교사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이버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교육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 관련 사이트 : 멀티 클래스(t.multiclass.co.kr), 티-나라, 에듀 포 유 등
 - 초·중·고 교과서 반영자료 작성을 위한 조사·분석용역 실시
 - *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새로운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추진

-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급식을 중·고교 학생까지 확대도록 지원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 추진
- 초등학교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급식을 중·고교 기초 생활 수급자(급식비지원대상자)에 확대, 지원하는 방안 강구

* ('04) 210천명 → ('05) 297(중학생 69) → ('06이후) 352(고등학생 73)

□ 추진일정

구 분	1단계('04)	2단계('04~'08)	3단계('09 ~)
학교우유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비홍보로 우유급식을 향상 - 초·중·고 우유 급식율 :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과정에 우유교육 내용 수록 · 이벤트등 소비홍보 강화 - 초·중·고 우유 급식율 :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중·고생으로 급식확대 - 초·중·고 우유 급식율 : 60%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학교우유급식은 청소년의 체위향상과 우유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81년부터 축산발전기금으로 보조지원

<학교우유급식 실시현황>

(단위 천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체학생수	7,792	4,164	1,859	1,746	23
급식 인원수	3,969	3,294	395	264	16
비율(%)	50.9	79.1	21.2	15.1	71.8

□ 문제점

-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하는 정부의 우유급식 지원
- 초등학교의 학교우유 급식율은 높으나, 중·고등학교는 매우 저조
- 학교우유급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백색시유보다 가공유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

3. 보완대책 및 요구사항

□ 학교우유급식정책 접근방식의 전환

- 학교우유급식의 목적은 소비촉진이 아닌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관련부처인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재경부 등의 공동추진을 통한 학교우유급식의 정책수립이 필요
 - 미국의 학교내 청량음료 판매금지법, 중국의 10대 정책사업 중 낙농정책추진

□ 초·중·고교의 우유급식 의무화

- 성장기 2세 국민의 체력향상과 정상적인 신체발육의 중요성
- 선진국과 같이 학생 개개인의 가정형편 등 선택적인 개별급식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전액지원 또는 상당부분 지원을 통해 우유급식 의무화

□ 학부모 및 소비자단체 대상 교육강화

-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학부모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학교우유급식 및 우유음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강화

6-25. 축산물 소비홍보

1. 농림부 종합대책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안전식생활 교육 등
- HACCP 적용업체 축산물 이용 캠페인 등
- 우리나라 축산물 홍보 교육 등
- 축산물 구입·소비형태와 육류구분방법 등 교육
- 축산시책 홍보전단, 포스터 제작·배포 및 신문광고 등

□ 추진일정

추진 전략	1단계('04)	2단계('05~'08)	3단계('09~)
○ 소비자단체 협력사업강화 및 소비홍보사업자조금 사업으로 전환	○ 소비자단체 협력사업추진 ○ 자조금 사업전환 추진	○ 사업정착	○ 사업정착

2.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일정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전단, 포스터제작·배포 및 소비촉진시설회, 세미나 개최
- 가격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임시적·단편적인 홍보실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기능 미흡

3. 보완대책 및 요구사항

□ 검증된 축산물 관련 자료의 개발 및 홍보실시

- 공인된 기관의 축산물 관련 연구 활성화 및 결과 활용
- 의사협회, 영양학회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과 연계한 소비자홍보

추가 요구사항

1.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 현황

- 그 동안 협회에서는 낙농가 성금모금과 정부지원으로 두차례에 걸쳐 북한에 지원한 바 있음
 - 대북 분유지원 : '02년 400톤, '03년 1,000톤
- 현재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에서는 04년 11월~12월까지 '북녘어린이에게 사랑의 우유보내기 운동'을 전개중에 있으며, 모아진 성금으로 우유를 구입, 전달예정에 있음

□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방안(안)

- 대상 : 북한 초등학생(약250만명) 중 50만명 수준
- 소요량 : 연간 약 36,500톤(365일 기준)
- 지원품목 : 멸균유(시유의 경우, 유통기간이 짧아 변질 우려)
- 지원방법 : 멸균제품을 초등학교 급식용으로 공급
- 소요비용 : 약 433억원(365일, 237원/개 급식기준)

□ 통일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비용 절감

-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의 고른 성장을 위해 완전 식품인 우유를 공급함으로써 국내 낙농산업 기반유지에도 도움
-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우유지원은 오히려 통일 후 사회적 비

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대북협력기금 이용 방안 마련

2. 치즈기금 마련 등으로 유제품 시장 형성

□ 치즈 생산 및 수입 동향

	생 산				소 비			
	계	자연 치즈	가공 치즈	수 입	계	자연 치즈	가공 치즈	수 출
1998	23,411	3,468	6,680	13,263	24,904	16,313	8,591	0
1999	35,302	5,194	8,824	21,284	34,104	18,745	15,303	56
2000	45,515	4,107	10,873	30,535	44,896	22,198	21,991	707
2001	54,513	8,235	11,825	34,453	53,797	28,119	24,973	705
2002	52,690	9,508	11,198	31,984	52,902	29,978	22,378	546
2003	58,419	11,569	11,068	35,782	58,632	33,406	24,528	698

○ 국내 치즈소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 생산은 30% 미만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음

- 유업계에서는 당장의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선치즈를 수입하여 가공치즈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 치즈기금 마련으로 국산원유 사용 유도

○ 치즈기금을 마련하여 국내산 치즈와 분유사용시 수입과의 차이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치즈 및 유제품 수입시 관세의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 정부에서도 일정기간 출연하여 치즈기금 마련

□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 현재는 시유위주의 정책에서 치즈를 비롯한 유제품 시장형성을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함
- 국산치즈의 생산확대를 위해서는 수입치즈와의 차별화가 용이하며, 국내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신선치즈(크림치즈, 모짜렐라 치즈 등) 중심의 다양한 제품개발
 - 치즈는 유제품의 꽃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국내에도 치즈소요량이 급증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낙농산업 기반유지에 치즈의 국내산 원유사용 확대는 필수임

3. 유가공(낙농)조합 활성화

□ 유가공(낙농)조합의 경쟁력 강화

- 목우촌 등 유가공조합이 폐쇄하고, 낙농조합의 통폐합이 이루어짐
 - 서울우유, 춘천축협, 부산우유, 제주낙협외 유가공조합 모두 폐쇄됨
- 조합의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업의 재정적 지원

□ 장기적인 낙농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한 유가공(낙농)조합 육성 및 활성화

-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동향 파악 및 수입유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

- 생산자재의 공동구입, 농가지도의 활성화, 헬퍼제도 실시, 젖소의 진료사업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4. 단체급식 확대

□ 기업체 직장인 대상 단체급식 확대

- 기업체와 연계하여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단체우유급식 실시
- 기업체 및 유업체, 정부가 급식비를 일부지원하는 방안강구

□ 독거노인 및 생활보호 대상 노인 우유급식 실시

- 영양상태가 불량한 노인들에게 사회복지차원에서 우유급식 실시
- 정부지원사업으로 농림부, 보건복지부, 재경부 등 관련부처의 공동정책수립

정책지원(추가)

낙농연구소 설립

1. 현황 및 문제점

- 지금까지 국내 낙농은 성장경제 하에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음
- 그러나, UR협상 이후, 소비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전환되면서 대외적인 수입증가와 대내적인 백색시유 소비둔화라는 2중고에 직면하면서 수급불균형 및 축소균형을 강요받고 있음
- 이같은 상황에서 우유·유제품의 식품으로써의 영양가치 및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소비확대를 실현하고,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supply-chain-management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공유를 통해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낙농연구소의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2. 대책방안 및 요구사항

□ 낙농연구소 설립

- 낙농연구소의 설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재정적 지원임
- 낙농정책 개발, 낙농현장 기술 등 전반적인 낙농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 설립 필요

□ 낙농연구소의 기능

- 낙농정책 개발, 평가 및 대안 제시

- 낙농산업의 중장기 안정대책 방안 제시
- 낙농선진국의 사례 및 동향 조사
- 기 타

후계자 및 인력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낙농은 타 작목보다 두당 자본 투자액이 높고, 과학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축종으로 특별한 사양기술을 습득해야 양질의 우유 생산이 가능함
 - 젖소를 구입하고 젖을 짜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여 시간이 걸리고, 자본투자액도 타 축종에 비해 상당히 높음
- 우유생산제한(쿼터제)으로 신규진입은 어렵고 농가폐업은 계속 늘어나 농가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낙농은 365일 2~3차례씩 매일 착유해야 하는 노동구속력이 강한 특성을 지녔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헬퍼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 체계적인 전문교육 부진에 따른 낙농헬퍼 요원 자질 미흡
 - 헬퍼요원의 장기적인 신분보장 미흡

2. 대책방안 및 요구사항

- 낙농후계자 육성 및 지원
 - 낙농후계자 육성 및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 후계자 정책지원
- 헬퍼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 헬퍼 요원의 정기적·체계적 전문 교육 실시 및 전문 양성 지원
 - 지자체별 헬퍼사업 실시 및 지원 강화로 지역사업으로 정착